

2000. 2. 24

제9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화 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를 폐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확대 실시하며, 전 국토 폐기물 투기 금지 지역화 및 주민에 대한 청결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후속 조치로 행정 규제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청결 유지 의무 부여 및 폐기물 투기 금지(제5조)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재질에 대한 생분괴성 물질을 추가(제10조)
-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폐지로 “생활폐기물 보관 설치 사항 폐지”(제20조)
- 청결 유지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6조)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확대(제29조)

3. 검토의견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의 규제사무를 폐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확대 실시와 전 국토 폐기물 투기 금지 지역화 및 주민에 대한 청결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등 본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3항에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99년 2월 8일 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조례 개정안 제5조제3항에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별표3】에 신설하였으며

○ 조례안 제10조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탄산칼슘을 함유시켜 제작·사용중인 쓰레기봉투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재질에 생분해성 수지를 함유시켜 친환경적인 생분괴성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던 조례안 제2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항은 상위법 폐지로 삭제하였으며

○ 조례안 제23조 제2항 【별표6】을 【별표7】로 개정은 종전 조례 개정 당시 【별표7】(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별표6】(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으로 잘못 기재한 내용임.

【별표7】의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가격의 연도별 자립도 적용비율을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조정

○ 조례안 제29조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조항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던 규정을 “신고 포상금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8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자는 것이며

○ 조례안 제26조와 관련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1의 마 항목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표준안에 의해 일부 규정을 개정 주민에 대한 청결 의무를 부여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규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됨.